

Thursday, February 17, 2000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이혼한 아내 파산하면 내게도 책임 오나

〈문〉 저는 3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판결문 당시 저희는 LA에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아 판결문에는 두 사람 공동의 재산으로 규정하되 집을 팔게 될 경우 돈은 법원의 처분 판결이 다시 날 때까지 에스크로에 끌어두기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전에 집이 팔려 현재 돈이 에스크로에 들어 있는데 전처가 파산 시청을 했습니다. 파산 법원의 Trustee가 에스크로에 현재 들어 있는 돈도 전처의 빚을 정리하는데 사용되도록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이 3년 전에 끝났는데 왜 저의 재산 권리까지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답〉 현재 에스크로에 들어있는 집 매매금의 50%는 귀하의 재산이며 그 부분은 전처의 파산 신청이나 판결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파산법 제541 (a)(2)조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파산 신청 당시 채무자와 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 재산은 채무자가

가 그러한 공동 재산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채무자의 부채를 정리하는데 사용되는 재산으로 신고 혹은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때, 법조항에 있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법적 해석이 채무자의 전 배우자까지 포함되느냐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1994년 파산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의 법적 의미에 대한 해석과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파산법 제541 (a)(2)조의 채무자의 배우자는 채무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된 배우자는 채무자의 파산에서 채무자의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처가 파산을 신청하였을 당시 아직 최종적으로 법적 처분이 끝나지 않은 두 사람의 공동 소유의 재산이 남아 있다하나 귀하의 뒷에 해당하는 매매금의 50%는 전처의 파산 신청에 힘드는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파산 법원 Trustee 가 낸 신청서를 위에 설명된 법적 근거에 의하여 기각시키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문 이혼 소송중 아내가 자식들 데리고 도망갔는데

〈문〉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종 재판 때까지 아이들을 등등한 비율로 일주일씩 맡아가며 키우기로 법원의 명령 없이 합의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니 아내도 아이들도 온다 맡고 없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아내는 별거하면서부터 저에게서 아이들을 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미국은 이혼이 여자한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아내가 법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숨겨도 되는 것입니까.

〈답〉 아니라고 봅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제277 조에 따르면,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양육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즉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한쪽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의도로 자녀를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은닉하거나 혹은 타주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 최고 1년의 징역을 살거나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혹은 이 두 가지의 처벌을 동시에 판결 받게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인 경우에는 1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징역을 살거나 1만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혹은 두 가지의 처벌을 동시에 판결 받게 됩니다. 법이 예외로 다루는 정당한 사유는 한쪽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 한다던 지 심한 가정 폭력의 사례가 있어서 부모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의 기록이 없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도 자녀 양육권의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문 LA 사는데 라스베가스서 속성 이혼할 수 있나

〈문〉 얼마전 남편이 라스베가스에 접수했습니다는 이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별거한지 3년 정도는 되지만 남편은 내내 LA에 살면서 아이들을 만나러 오곤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LA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의 거주인은 라스베가스의 법원을 통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의 법원은 그 주의 거주인 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LA에서 라스베가스의 거주 인도 아니면서 라스베가스의 법원을 통해 이혼 판

결문을 빠른 시일 내로 받아보려는 시도가 간혹 있어 왔으나, 이러한 시도는 불법 행위이며 거주지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위증을 하는 행위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법원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이전에 라스베가스에 지속적으로 6주 이상을 거주인으로 체류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즉시 남편의 변호사에게 거주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라스베가스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것을 요청하십시오.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염두에 두는 페어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시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